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12. 18.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8년 11월 19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11월 20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08. 12. 4)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요철)

가. 제안이유

- 우리구 “복무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에 따라 정비함과 아울러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에 따라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환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종교차별 금지조항 신설에 따른 복무조례 개정 (안 제5조)
-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온라인 원격근무 직원에 대한 근무규정 마련 (안 제13조제4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조례 반영
 -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안 제19조)
 - 공무원의 헌혈 참가시 공가처리 규정 신설(안 제23조제9호)

- 임신중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규정 신설(안 제24조제5항)
-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규정 신설 및 결혼에 따른 경조사 휴가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별표 3))
-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4조제11항)
- 개정 또는 폐지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개정 및 삭제(안 제12조제3항, 제23조제5호, 제28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에 따라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안 제1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22조, 안 제30조 등)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審査結課：原案 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84 호
----------	---------

제출연월일 : 2008.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우리구 『복무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에 따라 정비함과 아울러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에 따라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종교차별 금지조항 신설에 따른 복무조례 개정(안 제5조)

나.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온라인 원격근무 직원에 대한 근무규정 마련(안 제13조 제4항)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조례 반영

-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안 제19조 제1항)
- 공무원의 헌혈 참가시 공가처리 규정 신설(안 제23조 제9호)
- 임신중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규정 신설(안 제24조 제5항)
-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규정 신설 및 결혼에 따른 경조사 휴가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별표 3)

라.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4조 제11항)

- 마. 개정 또는 폐지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개정 및 삭제(안 제12조 제3항, 제23조 제5호 및 제28조 제1항)
- 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에 따라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안 제1조, 제8조, 제10조, 제22조 및 제30조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08. 11. 8 ~ 11. 17)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사무 없음

첨부 : 1. 개정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의3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으

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0조에 따라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 등의 변경”을 “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연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제직기간의 계산 등) 제18조의 제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제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0조제5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및 “당해”를 “제18조에 따른” 및 “해당”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연도” 및 “잔여”를 “해당연도” 및 “남은”으로 각각 한다.

제21조제2항 중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을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3항에 따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상해로 인하여 직무불능일 때”를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 및 “당해”를 각각 “전염병” 및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을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로, 같은 조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제5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하고,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⑪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

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5조 중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제27조”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조와 조 제목은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3
입양	본인	14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법 제59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u>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선서)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 <u>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u>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하는 선서는 "별표1"의 선서에 의한다.</p> <p>제5조(친절, 공정) <u>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u></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u>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u>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9조(파견근무)① <u>법 제30조의 4 규정에 의하여</u>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근무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u>당해</u>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u></p> <p>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p> <p>-----</p> <p>-----</p> <p>제2조(선서) ----- 법 제 47조에 따라 -----</p> <p>-----</p> <p>제5조(친절 · 공정) ① <u>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u></p> <p>② <u>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u>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u></p> <p>제8조(출장공무원) -----</p> <p>-----</p> <p>----- 해당 -----</p> <p>-----</p> <p>제9조(파견근무)① <u>법 제30조의4에 따라</u></p> <p>-----</p> <p>-----</p> <p>-----</p> <p>② -----</p> <p>-----</p> <p>----- 해당 -----</p> <p>-----</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p>	<p>③ ----- ----- ----- 「제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 ----- -----.</p>
<p>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단서,생략)</p> <p>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에 따라 ----- ----- ----- ② ----- ----- ----- 해당 ----- -----.</p>
<p>제12조(복장 및 제복) ①(생략) ②(생략)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p>	<p>제12조(복장 및 제복)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 ---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 ---.</p>
<p>제13조(근무시간) ①(생략)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단서 신설></p>	<p>제13조(근무시간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 .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③(현행과 같음)</p> <p>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0조에 따라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생략)</p> <p>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제18조(연가일수) ①(생략)</p> <p>②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p> <p>1~2(생략)</p> <p>제19조(근속기간의 계산) 제 18조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④(생략)</p> <p>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연장)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 ----- ----- ----- -----</p> <p>제18조(연가일수) ①(생략)</p> <p>② 해당연도 ----- ----- ----- ----- -----</p> <p>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제18조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 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p> <p>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p> <p>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p> <p>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p> <p>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④(생략)</p> <p>⑤ ----- 제18조에 따른 ----- ----- 해당 ----- ----- ----- -----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끝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생략)</p> <p>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 </div> <p>○ 휴직자의 ----- × 당해연도 연가일수 연가일수 12월</p> <p>③(생략)</p> <p>④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⑥ ----- 해당연도 -- 남은 ----- ----- ----- ----- -- 해당연도-----.</p> <p>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현행과 같음)</p> <p>②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 ----- 해당연도----- ----- ----- ----- ----- ----- -----.</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 </div> <p>○ 휴직자의 ----- × 해당연도 연가일수 연가일수 12월</p> <p>③(현행과 같음)</p> <p>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 ----- ----- ----- -----.</p> <p>제22조(병가) ① ----- ----- ----- ----- ----- ----- 제21조제3항에 따라 -----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질병 또는 <u>상해로 인하여 직무불능일 때</u></p> <p>2. <u>전염병의 이환</u>으로 인하여 <u>당해</u>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p> <p style="text-align: right;">②~③(생략)</p> <p>제23조(공가) (생략)</p> <p>1. <u>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u>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p> <p>2 (생략)</p> <p>3. 법률의 규정에 <u>의하여</u> 투표에 참가할 때</p> <p>4 (생략)</p> <p>5. <u>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 20조의 규정</u>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p> <p>6. <u>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u>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p> <p>7~8(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4조(특별휴가) ①(생략)</p> <p><u>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③~④(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 ----- <u>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p> <p>2. <u>전염병</u> -----<u>해당</u>-----</p> <p style="text-align: right;">②~③(현행과 같음)</p> <p>제23조(공가) (현행과 같음)</p> <p>1. 「<u>병역법</u>」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p> <p style="text-align: right;">2 (현행과 같음)</p> <p>3. 법률의 규정에 <u>따라</u> 투표에 참가할 때</p> <p>4 (현행과 같음)</p> <p>5. 「<u>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u>」 제26조에 따라 -----</p> <p>6. 「<u>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u>」 제29조에 따라 -----</p> <p>7~8(생략)</p> <p>9. 「<u>혈액관리법</u>」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p> <p>제24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p> <p><u>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③~④(생략)</p> <p>⑤ <u>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 14조제 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u>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u>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 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⑥~⑨(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u>제24조항의 규정</u>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8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u>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u>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생략)</p>	<p>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 (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p> <p>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p> <p>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p> <p>⑥ ----- 「<u>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u>」----- ----- -----.</p> <p>⑦~⑩(현행과 같음)</p> <p>⑪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p> <p>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제24조제1항에 따른 ----- -----.</p> <p>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p> <p>제28조(겸직허가) ① ----- 제27조----- ----- ----- -----.</p> <p>②(생략)</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p> <p>제30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p>[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결혼</td> <td>본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td> </tr> <tr> <td>자녀</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td> </tr> <tr> <td>회갑</td> <td>본인 및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td> </tr> <tr> <td></td> <td>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td> </tr>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r> <tr> <td rowspan="5">사망</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td> </tr> <tr> <td rowspan="3">탈상</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대 상	일수	비 고	결혼	본인	7		자녀	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0		회갑	본인 및 배우자	0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0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0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0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0		<p><삭제></p> <p>제30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에 따른 ----- ----- -----.</p> <p>[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결혼</td> <td>본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td> </tr> <tr> <td>자녀</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r> <tr> <td>입양</td> <td>본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d></td> </tr> <tr> <td rowspan="3">사망</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body> </table> <p>비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p> <p>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p>	구분	대 상	일수	비 고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3		입양	본인	14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구분	대 상	일수	비 고																																																																																		
결혼	본인	7																																																																																			
	자녀	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0																																																																																			
	회갑	본인 및 배우자	0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0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0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0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0																																																																																			
구분	대 상	일수	비 고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3																																																																																		
입양	본인	14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